

상생 임대료 운동 지원 지방세 감면

경상남도	세 정 과	(☎055-221-3714)
함양군	재 무 과	(☎055-960-4330)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드립니다.

▶ 지원대상

- (임대인)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*한 건물주
- (임차인 기준)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(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)

▶ 지원내용

- (임대인) 해당 건축물에 대한 '21. 7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
- (감면세목)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- (감면액)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(최고 75%)

▶ 신청접수

- (신청기간) '21. 5. 11. ~ 6. 19.
- (신청서류) 감면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거래내역(인하 전·후)
- (신청방법) 함양군 재무과 방문·팩스·우편 등

[관련법령]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,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